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21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김상훈·김형동·이달희

김선교 • 이종욱 • 고동진

서명옥 · 김승수 · 강대식

김소희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 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 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 는 것임(안 제63조의3 및 제69조의2 신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부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분쟁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그 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장제3절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9조의2(소송 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절 차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
	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
	정부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
	게 분쟁조정을 행하게 할 수
	<u>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u>다.</u>
	③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조정위
	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u><신 설></u>	제69조의2(소송 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소송 수
	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u>다.</u>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
	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

- 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른 피
 해구제절차 또는 제65조제5
 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가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중지된 경우